

#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운영규정

2018.03.01. 제정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과정)** ① 한국어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.

② 정규과정은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로 나뉜다.

③ 필요에 따라 한국어과정 외의 특별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수업연한 및 수업방법

**제3조(수업연한)** ① 정규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4학기인 8학기인 4년으로 한다.

② 정규과정 1급에서 6급까지의 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유급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.

③ 특별과정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조정한다.

**제4조(수업방법 및 수업시간)** ① 정규과정은 한 학기에 10주 동안 200시간의 수업을 한다.

② 수업과정은 한국어수업과 한국문화체험으로 구성된다.

③ 수업시간은 정규과정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.

④ 특별과정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조정한다.

## 제 3 장 입학

**제5조(지원자격)** ① 고등학교 이상 졸업(예정)자 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학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여야 한다.

②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별도의 학력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서류)** ①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입학 허가를 받아야한다.

1. 입학지원서
2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3. 최종학교 성적증명서
4. 가족호구부 및 신분증 사본
5. 여권사본
6. 사진 1매 (3×4)
7. 잔고증명서

② 전항의 지원 서류는 지원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**제7조(입학금)** 처음 입학 지원하는 경우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**제8조(입학허가)** ①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.

② 비자신청이 필요한 자에게는 표준입학허가서(정부공인양식)를 발급한다.

**제9조(레벨테스트 및 오리엔테이션)** 입학이 허가된 자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에 맞는 급에 배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야 한다.

## 제 4 장 등 록

**제10조(등록과 수강)**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수강할 수 있다.

**제11조(등록완료)** 등록은 소정의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.

## 제 5 장 휴 학, 제 적 및 자 퇴

**제12조(휴학)** D-4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 휴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단, 질병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2월 이상의 장기 치료 또는 휴식이

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제적)**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출석률 60% 미만인 자
2. 5일 이상 무단 결석한 자
3. 동급 수업을 연속 3회 유급한 자
4.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
5. 한국어 연수 목적에서 벗어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 등 기타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한 자
6. 기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자 (예 : 학내 외 폭력, 약물복용, 학교 및 주변인에게 심리적/물리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 등)

**제14조(자퇴)** 자퇴하려는 자는 본인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15조(징계자 환불)** 제13조 각 호에 의거하여 제적된 자는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
**제16조(제적자 재입학)**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

## 제 6 장 수료 및 진급

**제17조(수료)** 과정별, 학기별 수업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하고, 평균 성적이 65점 이상인 경우에 수료를 인정한다.

**제18조(진급)** ① 한 급을 수료한 자는 다음 급에 자동으로 진급한다.

② 유급을 했으나 다음 급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진급이 허가될 수 있다.

## 제 7 장 시험 및 성적

**제19조(시험)**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한다.

**제20조(미 응시자 인정점수)** 학생은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 단, 질병 등의

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심사하여 재시험을 통해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.

**제21조(재시험)** ① 수료를 하지 못한 자 중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이고 동일한 급의 유급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**제22조(성적평가)** 학업성적은 각종시험의 결과와 출석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

**제23조(성적표시)** 학업성적은 100점(만점)~0점으로 표시한다.

## 제 8 장 출석 인정

**제24조(병결)** 본인이 긴급한 치료의 목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진단서에 근거하여 최대 2주까지 병결에 의한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.

**제25조(경조사)** 본인 및 직계가족(부모, 형제, 조부모)의 경조사가 있을 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1주까지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.

## 제 9 장 장학금 및 포상

**제26조(장학금)**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함께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단, 지급대상은 다음 학기 등록자에 한한다.

**제27조(포상)** ① 각 급별 성적 95점 이상자 중 1등의 학생에게는 최우수상을 수여한다.

② 각 급별 90점 이상의 학생에게는 우등상을 수여한다.

③ 매학기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한다. 단,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한 출석인정 학생은 제외한다.

④ TOPIK 3급 취득자에게는 10만원, 4급 취득자에게는 20만원, 대학 진학자에게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 출석률 80% 이상일 경우 지급한다.

⑤ 타의 모범이 되어 담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모범상을 수여한다.

⑥ 특별과정의 경우 과정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## 제 10 장 등록금 환불

제28조(등록금 환불)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개강 전 등록 취소한 경우 수업료의 100%
2.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자퇴한 경우 수업료의 80%
3. 개강 후 4주일 이내에 자퇴한 경우 수업료의 50%
4. 개강 후 4주일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 불가

## 제 11 장 기숙사

제29조(기숙사) ① 한국어과정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기숙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도에 퇴사할 경우의 환불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.

이용 시작일 기준	환불기준	비 고
개강 1일 이전	전액 환불	
개강 후 ~ 4주일 이내	1/2을 제외한 금액	
개강 후 4주일 이후	환불 불가	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